

시즌6
제12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 ▲ 이감

[2021학년도 시준6 제12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21] 인문 융합(주제 통합형)

: 중화적 세계관과 소중화에 대한 인식 전환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동양 철학 - 인물균론

- (가) 중화적 세계관, 중화, 이적, 옹정제, 『대의각미록』, 문화적 중화주의, 중정, 오류, 덕, 중외일통
(나) 소중화 사상, 홍대용, 인성, 물성, 인물균론, 기, 질, 이, 이천시물, 지구설, 무한 우주론, 화이일야

* (가) 지문 분석

문단1 :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

- 1)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전통적 세계 인식은 중화적 세계관이었다. 이는 세계를 중심부의 문명화된 『중화(中華)』와 변방의 야만 상태에 있는 『이적(夷狄)』으로 구분하고, 중화가 이적을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세계관이다.
⇒ ‘중화적 세계관’의 정의다. ‘중화’와 ‘이적’이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계층적 세계관인 것이다. ‘중화’는 우월하고 ‘이적’은 미천하고, 따라서 ‘중화’가 모자란 ‘이적’을 깨우쳐 줘야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2) 중화와 이적의 전통적 구분 기준은 시대에 따라, 국제 질서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으나 대체로 지역과 종족, 그리고 도덕에 기초한 문화라 할 수 있다. 중원 지역→ 지역을 점유하며 한족(漢族)의 혈통→ 종족을 가지고 『예(禮)』→ 도덕을 갖춘 집단이 중화이고, 그 외의 집단은 이적이라는 것이다.
[맥락 짚기] 1)에 대한 부연이다.
[참고] ‘한족’은 중국 본토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중국의 중심이 되는 종족이다. 한어(漢語)를 쓰며, 중국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단2 : 옹정제의 ‘문화적 중화주의’

- 1) 17세기에 이적인 만주인에 의해 명(明)이 망하고 청(淸)이 중원을 장악하자, 이 같은 전통적 세계 인식→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였다.
⇒ 세상의 변화는 사고방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 2) 특히 청의 황제, 옹정제는 『대의각미록』을 저술하여 한족 출신의 반청(反淸) 사상가인 중정의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반박하고 『문화적 중화주의』를 내세웠다.
⇒ ‘문화’를 앞세웠다는 데에서 느껴졌겠지만 ‘옹정제’는 기존의 중화적 세계관→ 한족 중심을 배격하고 그 대신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화주의를 내세우려 한 것이다.
- 3) 바른 기운을 얻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한족과 달리 치우친 기운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적은 짐승일 뿐이라는 중정의 견해에 대응하여, 옹정제는 맹자의 말을 제시하였다. 순은 동이(東夷) 사람이고, 문왕은 서이(西夷) 사람인데, 순과 문왕은 출신지에 상관없이→ 둘 다 ‘한족’이 아닌 ‘이적’ 출신임에도 문화와 도덕규범을 창출하여 성인(聖人)이 되었다는 것이다. 옹정제는 이→ 맹자의 말]를 근거로 지역이나 종족보다 도덕적 문화와 제도의 창출이라는 요소가 중화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정리하면, 집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핏줄이나 지역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라는 얘기겠다.

문단3 : 군신론과 정통성

- 1) 중정은 군신 간의 도리란 짐승이 아닌 사람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화와 이적의 구분, 즉 화이(華夷)의 구분이 군신 간의 도리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였는데, ...
⇒ 군신 간의 도리는 인간에게 통용된다. 이적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따라서 이적에게는 군신 간의 도리를 적용할 수 없고, 중화인 한족이 이적의 황제를 섬길 필요도 없겠다. 군신의 구분보다는 화이의 구분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옹정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논리를 부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 2) 옹정제는 이 논리 역시 반박하였다. 인간이 인간인 까닭은 오륜(五倫)이 있기 때문인데, 그 하나인 군신 간의 도리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 인간은 오륜을 지키는 존재다. 군신 간의 도리는 오륜 중 하나다. 군신 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적의 황제 역시 섬겨야 한다는 그런 논리였다.
- 3) 아울러 옹정제는 중화의 정통성은 [지역이나 종족이 아니라] 『덕(德)』에서 나오는 역설하였다. 그가 말하는 ‘덕’은 도덕적 ‘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방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윤락하게 하며 땅끝까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중외일통(中外一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의 정통성을 지역이나 종족이 아니라 ‘덕’에서 찾았다는 얘기겠다.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는 대신 중심부와 주변부를 함께 통합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었겠다.

문단4 : 옹정제의 ‘중외일통’의 의의와 영향

- 1) ‘중외일통’이란 중화와 그 바깥의 외국들이 하나의 세계라는 관점이기도 하다.
[맥락 짚기] 그렇겠다. 이전 단락과 가볍게 연결해 가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다.
- 2) 옹정제의 ‘중외일통’은 여전히 중화를 중심에 두고 다른 이민족들을 포괄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전통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 옹정제 역시 여전히 ‘화’와 ‘이’를 구분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화를 더 이상 ‘종족’과 ‘지역’을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 3) 이러한 세계 인식은 당대의 한족 지식인들이 화이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사신의 자격으로 연행(燕行)에 참가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 문명화된 중심이 변방의 야만 상태에 있는 주변을 다스린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홍대용 등장의 배경과 ‘인물균론’

- 1) 명(明)이 청(淸)에 의해 몰락하자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소중화(小中華)』 사상이 싹텄다. 이는 한족 중심의 중화가 사라졌으니 유교적 문화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조선이 곧 중화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전통적 화이론→ (가)의 문단1에 입각한 것이었다.
⇒ 비슷한 시대 조선의 상황이다. ‘소중화 사상’은 ‘전통적 화이론’의 ‘장소 이동 버전’이었던 것이다.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 2) 이러한 인식→ ‘소중화 사상’과 ‘전통적 화이론’이 바뀌게 되는 계기는 청으로의 수많은 연행과 이를 정리한 연행록의 영향에 있었다. 소중화 사상을 버리고 청을 배우자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홍대용이 있다.
[맥락 짚기] 앞으로 홍대용의 사상을 다루려나 보다.
- 3) 인간의 본성인 인성(人性)과 동물이나 사물의 본성인 물성(物性)이

다르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이적을 천하게 여기는 화이론에서 벗어나, ...
 ⇒ 화이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봄으로써 집승[→ 물성]에 대응하는 ‘이적’은 천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4) 홍대용은 만물(萬物)이 균등하다는 ‘인물균론(人物均論)’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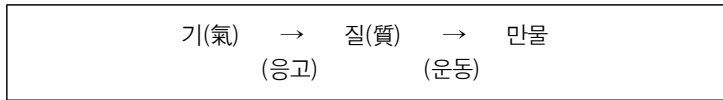
⇒ 그와 달리 ‘홍대용’은 인성과 물성을 차별하는 대신, 만물이 균등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었다.

[주목] 만물이 균등하다는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화’와 ‘이’에 대한 구분[→ 화이론]을 극복하는지에 집중해야겠다.

문단2 : 홍대용의 우주관

홍대용의 인물균론은 자신의 우주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물질인 ‘기(氣)’가 모여 응고하면 형태를 갖춘 ‘질(質)’이 형성되며, ‘질’의 운동에 의해 만물이 만들어졌다. 성리학적 관점과 달리 홍대용은 ‘이(理)’란 만물의 운행 법칙일 뿐, 만물의 형성을 주재하는 근본 원리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과 사물이 공히 ‘기’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사물을 차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은 모두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얘기다. 문단1-3)의 연장이다.



문단3 : ‘이천시물’의 관점

1) 다만 홍대용은 오류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도리[人道]를 사물의 세계에까지 확장시켜 인성과 물성을 동일시하는 입장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중요한 지적이다. ‘화이론’처럼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인성’과 ‘물성’을 동일하게 보는 것 또한 문제라는 얘기다.

2) 그는 오류인 인간의 ‘예’라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함께 먹이를 먹는 것은 동물의 ‘예’라고 하면서, 인간과 사물의 동등성을 바탕으로 하되 각자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이천시물(以天視物)’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인성’과 ‘물성’은 대등하되[→ ‘인성’이 ‘물성’보다 우월하지는 않지만, ‘인물균론’] 둘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문단4 : 무한 우주론

한편 홍대용은 서양에서 유입된 지구설을 받아들여 구(球) 형태를 취하고 있는 땅 위에서 중국이 유일한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지구 자체를 상대화하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유한한 공간을 상정하고 그곳의 한정된 대상들 간에 위계 질서를 부여하면[→ ‘화’와 ‘이’ 따위를 구분하면] 온갖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고, 시작도 끝도 없고 상하 구분도 없는 무한한 공간에서는 만물이 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 애초에 유한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위계질서를 부여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Rew] 문단1-3)에서 ‘홍대용’이 화이론에서 벗어났다는 설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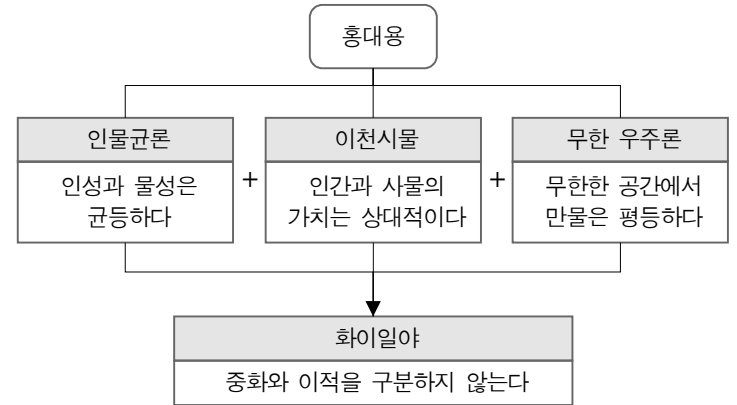
문단5 : ‘화이일야’

1) 이런 인식[→ 만물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홍대용은 신분을 구분하는 귀천론(貴賤論)에 반대하며 인간과 사물 간의 균등은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까지 주장하였다.

⇒ 인간 사이의 신분 차별까지 반대했다는 것이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두가 마땅히 ‘오륜’을 따라야 하고, 똑같이 물질에서 비롯된 것인데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2) 소중화 사상에서 벗어나,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지 않는[→ 화이론에서 벗어나] ‘화이일야(華夷一也)’를 제기한 데에는 이러한[→ 만물은 균등하며,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다.

[주목] ‘홍대용’의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 중화와 이적의 구분에서 벗어난다면 당시 ‘이적’이라고 멸시하던 ‘청나라’를 배우자는 주장에도 타당한 명분이 될 것이다.

[27~30] 기술 : 얼굴 인식 기술과 머신 러닝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공학 - 얼굴 인식 기술

얼굴 인식 기술,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머신 러닝, 그레이디언트, 그레이디언트 패턴, 정규화, 표준 이미지, 정렬 기준점, 특징점, 임베딩, 임계치, 유클리디안 거리, 가중치, 학습 이미지, 인공 신경망

* 지문 분석

문단1 : 얼굴 인식 기술의 단계와 조건

- 1) **『얼굴 인식 기술』**은 **『디지털 이미지』**에서 **얼굴을 감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이미지들 중 **동일한 인물의 얼굴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 그렇다. ‘디지털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얼굴을 감지하고, 감지된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식별하는 기술인 셈이다.

- 2)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적절하게 변형** [→ 첫 번째 조건]하는 한편, **수많은 얼굴 이미지들을 토대로 한 기계 학습**[→ 두 번째 조건]인 **머신 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맥락 짚기』 앞으로의 화두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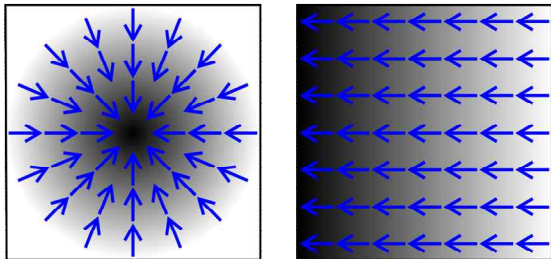
문단2 : 얼굴 감지 단계

- 1) 얼굴 인식의 첫 단계는 입력된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꾸고 얼굴이 있는 부분을 찾는 단계**이다.

『Rew』 문단1-1)의 ‘얼굴을 감지하여’에 대응하는 단계겠다.

- 2) 이를 위해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꾼 뒤]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들인 **각 화소들에 그레이디언트를 표시**한다. **『그레이디언트』**는 **해당 화소와 주변 화소들의 명암을 기준으로 할 때**[→ 인접한 화소의 명암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뜻한다.

⇒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 되겠다. 모든 화소에 상대적인 명암을 나타내는 **화살표**[→ 수학적으로는 ‘기울기 정보’에 해당하겠다.]를 표시해 준다는 게다.



- 3) 이렇게 형성된 **『그레이디언트 패턴』**은 [화소들 간의 상대적인 명암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에서의 **조명의 밝기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 [→ 이미지 전체의 밝기가 어떠하든 일정한 형태]를 띠는데, ...

⇒ 따라서 ‘어두운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 얼굴’이든 ‘밝은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 얼굴’이든 마찬가지로 ‘사람 얼굴에 대응하는 그레이디언트 패턴’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다.

- 4) 사람의 **얼굴 이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레이디언트 패턴**이 확인되는 부분에 **얼굴이 있다고 판단**한다.

⇒ 됐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감지하는 게다.

- 5) 이때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얼굴을 확인**할 수도 있다.
⇒ 디지털 이미지에 얼굴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개의 ‘사람 얼굴에 대응하는 그레이디언트 패턴’을 얻을 수 있을 게다.

문단3 : 정규화 단계

- 1) [얼굴을 감지한] **다음 단계**는 **얼굴 이미지 부분을 정규화**하는 단계이다. **『정규화』**란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비틀어서**[→ 이미지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정면에서 촬영된 얼굴의 형태인 『표준 이미지』에 맞추는 것** [→ 소위 증명사진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Rew』 문단1-2)에 나왔던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겠다.

⇒ 사람들이 항상 증명사진만 찍지는 않으니, 각 사진마다 각도나 방향 등의 차이가 존재할 게다. 우리가 철수의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보고 쉽게 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컴퓨터가 각 이미지를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정면 사진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다.

- 2) 이[→ 정규화]를 위해 **얼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인 눈 가장자리, 눈썹 안쪽, 코, 입술 가장자리, 턱선 등으로 구성된 68개의 『정렬 기준점』**을, **그레이디언트 패턴을 토대로 이미지에서 찾아 정렬에 활용**[→ 정규화에 활용]한다.

⇒ 얼굴 이미지 안에서 어디가 눈 가장자리이고, 또 어디가 눈썹 안쪽 인지 등을 역시 그레이디언트 패턴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 3) 정렬 후에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의 조명**의 영향을 줄인다. 만일 촬영된 각도로 인해 [68개의] **정렬 기준점**을 모두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얼굴 인식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 당연히 ‘정렬 기준점’을 최대한 다 찾는 편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이겠다.

문단4 : 임베딩 단계

- 1) 얼굴 이미지에서는 귀의 크기, 눈 사이의 간격, 코의 길이 등 **개별 얼굴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점』**들을 찾아 **수치화**할 수 있다.

⇒ 맞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치화’가 필수적이다.

- 2) 마지막 단계는 **정규화된 얼굴 이미지**[→ 표준 이미지에 맞춘 결과물]에서 **특징점들의 수치를 추출한 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얼굴을 찾아 식별**하는 단계이다.

⇒ 전체적으로 특징점의 값들이 비슷하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얼굴 이미지’와 ‘정규화된 얼굴 이미지’가 동일한 얼굴 이미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게다.

- 3) 특정 얼굴 이미지에서 찾은 특징점들의 수치가 ‘3, 1, 5...’라 할 때 [3, 1, 5...]의 형태로 묶은 것[→ 특징점 수치들을 하나의 값으로 묶은 것]을 해당 이미지의 **『임베딩』**이라 한다.

⇒ ‘임베딩’은 훨씬 복잡한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딱 이 정도로 이해 해도 무방하겠다.

- 4) 데이터베이스에는 **누구의 얼굴인지 확인된 수많은 얼굴 이미지들과 함께 각 이미지들의 임베딩이 미리 계산되어 저장되어 있다**. **동일인의 얼굴 이미지들은 임베딩이 거의 비슷하므로**, ...

『Rew』 문단1-1)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이미지들’에 대응하는 설명이겠다.

- 5) 입력된 이미지에서의 얼굴의 임베딩과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임베딩 간의 거리가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 둘을 동일인으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 타인으로 식별**한다.

『Rew』 문단1-1)의 ‘동일한 인물의 얼굴을 찾아 식별하는’ 방법이다.

문단5 : 임베딩의 거리와 가중치

- 1) 두 임베딩의 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로 구한다. 이는 두 임베딩에서 각각 대응하는 특징점의 수치들을 **뺀 값을 제곱한 후 모두 더한 값의 제곱근**이다. 예를 들어 [2, 2], [0, 4]의 거리는 $(2-0)^2 + (2-4)^2 = 8$ 에 루트를 씌운 $\sqrt{8}$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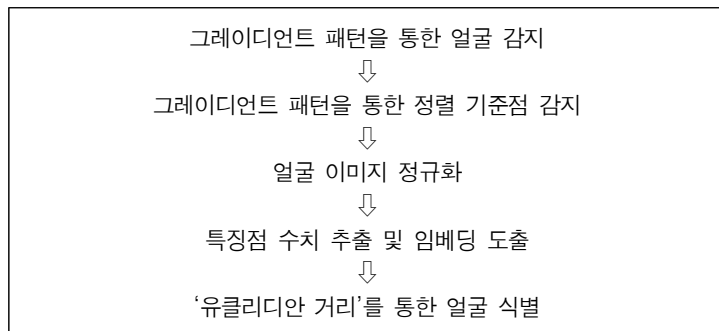
⇒ 특징점이 더 많다면, 예컨대 [2, 2, 2], [0, 4, 4]라면 ‘유클리디안 거리’는 $(2-0)^2 + (2-4)^2 + (2-4)^2 = 12$ 에 루트를 씌운 $\sqrt{12}$ 가 될 것이다.

- 2) 각 특징점마다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 어떤 특징점은 더 중요하고 어떤 특징점은 덜 중요하게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징점의 수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한 후 계산**한다. [각 특징점마다 부여된] 가중치가 순서대로

1, 0.5라면, [이전 문장의 [2, 2], [0, 4]는 [2, 1], [0, 2]가 되어] 거리는 $(2-0)^2 + (1-2)^2 \rightarrow (2 \times 0.5 - 4 \times 0.5)^2 = 5$ 에 루트를 씌운 $\sqrt{5}$ 가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사람 간의 얼굴을 식별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점’일수록 가중치는 더 크게 부여될 수 있겠다.

[주목]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문단6 : 머신 러닝

1) 특징점을 사람이 정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수많은 학습 이미지들로 머신 러닝을 거쳐 정확도를 높인다.

⇒ 한마디로 ‘머신 러닝’을 통해 어떤 특징점을 사용해야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팩트 짚기] 문단1-2)에서 언급된 두 번째 조건이다.

2) 가령 사용할 특징점의 수가 128개이면, 인공 신경망은 머신 러닝을 거치면서 [얼굴 이미지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징점들 중에 128개의 특징점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임베딩을 구성한다.

[참조] 이때 당장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수천 개의 특징점들을 전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머신 러닝에서는 적절한 수의 최적의 특징점을 선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3) 이 과정에서 특징점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도가 높아진 이유를 설명할 방법은 없으나, 실제로 정확도가 높아진다.

⇒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계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특징점들에 먼저 주목하는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왜’ 저 특징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는가? 정확도가 높아지면 됐다.

4) 머신 러닝은 특징점을 확정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 수천 개의 특징점들 중에서 128개의 특징점을 정할 뿐만 아니라, 128개의 특징점에 대응하는 가중치들 역시 조정하나 보다.

5) 어떤 학습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동일인을 다른 얼굴이라고 식별하면 [→ ‘유클리디안 거리’가 ‘임계치’보다 작아야 하는데 큰 경우에는]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가중치를 조정[→ 특징점의 가중치들이 작아지게 조절]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

⇒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는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하고 ……

6) …… 타인을 같은 얼굴이라고 식별하면 [→ ‘유클리디안 거리’가 ‘임계치’보다 커야 하는데 작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 특징점의 가중치들이 커지게 조절]하거나 ……

⇒ ……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거다. 아니면 더 나아가 ……

7) …… 특징점 중 하나 이상을 교체[→ 128개 중 일부를 교체]하는 방법을 시행한다.

⇒ …… 아예 애초의 특징점을 교체하기도 한다.

8) 이러한 학습을 수없이 반복해야 [→ 머신 러닝을 거쳐야] 얼굴 인식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팩트 짚기] 물론 이 과정은 실제 ‘얼굴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보다는 얼굴 인식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단계에 더 가깝다.

[31~34] 고전소설 : 남영로, 「옥루몽」

* 수록 지문 평가

19세기 중반에 남영로가 지은 이 작품은 당대 사대부의 의식을 반영한 고전 소설의 총결산이며 봉건 사회상을 드러낸 작품 중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다. 귀한 신분을 지닌 두 본부인보다 기생 출신인 두 명의 첩 강남홍과 벽성선, 소수 민족 출신인 첩 일지련이 서사의 중심에 서서 흥미진진하고 개성적인 활약상을 보인다는 점이 독특하다. 아래 지문은 황 부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암살당할 뻔한 벽성선이 자신의 결백함을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다. ‘노랑’이라는 할머니 자객의 등장과 그 의협심에 주목해 읽으면, 작품이 한결 흥미롭게 전개된다는 걸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작품만의 독특한 인물 설정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양창곡이 원수로 참전하여 집을 비운 사이, 부인 황 씨와 그 모친 위 씨가 첩 벽성선(선랑)을 음해한다.

토막1 : 황 씨 모녀가 춘월과 함께 벽성선을 암살할 계교를 꾸밈

차시(= 이때) 황 씨 모녀가 간독한[→ 간사하고 독살스러운] 계교로 두 번 벽성선을 모해하다가[→ 황 부인이 벽성선을 질투하여, 벽성선이 집안으로 외간 남자를 끌어들었다거나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괴롭혔던 거다. 첩이 본부인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인이 첩을 질투한다는 설정이 「사씨남정기」를 비롯한 여러 고전 소설들과 다른 점이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본가[→ 황 부인의 친정집]로 돌아와 주야로 초조하고 급하더니, 양 원수의 회군(= 군사를 돌이켜 돌아옴)함을 듣고 위 씨 황 소저[→ 황 부인을 뜻한다.]를 대하여 왈,

“이는 회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니.[→ 양 원수가 없는 사이에 마음대로 일을 꾸몄는데, 이제 양 원수의 회군으로 자기네들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뜻이겠다.] 여아(女兒)는 장차 어찌코자 하나뇨? 악한 물건이 독을 품은 지 오래니.[→ ‘악한 물건’은 벽성선을 가리키는데, 자신들이 벽성선을 모해한 것에 벽성선이 원한을 품고 있으리라는 짐작인 거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셈이다.] 원수가 집에 돌아오면 그 보복이 어느 지경에 이르리요?”

황 소저가 아미(=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를 숙이고 답하지 않거늘, 시비 춘월이 왈,

“봄이 다하면 겨울이 돌아오고 그릇이 가득한즉 기울어지기는 당연한 일이라. 부인이 이전에 계교를 서투르게 하신 연고라, 무익하게 심려를 허비하지 마소서.”

⇒ 애초에 벽성선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마음 쓰고 걱정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겠다.

위 씨 탄식하여 왈,

“춘월아! 너는 소저의 심복이라. 어찌 사생(死生) 환란에 남의 말 하듯 하나뇨? 소저는 천성이 유약하여 멀리 헤아릴 줄 모르니 네 어찌 묘한 계교를 생각지 아니하나뇨?”

춘월 왈,

“속담에 이르되 ‘풀을 버히매 뿌리를 없이 하라.’[→ 풀을 없애려고 벨 때는 뿌리를 없애야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였거니와, 부인은 종시[→ 끝내] 화근(= 재앙의 근원)을 묻어 두고 계교를 물으시니 천비(賤婢, 신분이 천한 여종,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 어찌하리잇고?”

⇒ ‘화근’인 벽성선을 살려 두고선 화를 피할 계책이 달리 없다는 뜻이겠다.

위 씨 이에 춘월의 손을 잡아 왈,

“이는 정히 나의 근심하는 바라. 이제 어찌하면 그 뿌리를 없이 하리요?”

춘월이 대답하여 왈,

“금일 풍파가 결말이 없음은 선랑[→ 벽성선의 ‘선’에 아가씨 ‘랑’을 붙여 벽성선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이 지문의 뒷부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양창곡의 또 다른 첩인 강남홍을 ‘홍랑’이라 부르고 있다.]을 살려 둔 연고라. 유방이 항우를 죽여 팔 년 고생을 마쳤나니,[→ 유방이 항우를 죽이고 비로소 고생을 마쳤다는 고사를 통해, 벽성선을 죽여야 문제가 해결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인이 만일 엄중자[→ 원수를 죽이려고 자객에게 금 백 냥을 준 한나라 사람]의 백금(百金)을 아끼지 않으신즉 천비 마땅히 장안을 물색해 자객의 날랜 칼을 도모할까 하나이다.”

⇒ 돈 아끼지 말고 거금을 들여 실력 좋은 자객을 사서 벽성선을 없애야 한다는 거다. 벽성선 암살에 시비 춘월이 주도적으로 나섬을 알 수 있다.

(중략)

토막2 : 벽성선의 결백이 밝혀지고 집으로 돌아옴

연왕 양창곡[→ 전쟁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그사이에 연왕으로 책봉되었다.]이 부친 태상왕의 명을 받들어 외현(=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 나와 자객을 잡아들여 엄문(= 엄하게 심문함) 왈,

“네 조금이라도 숨기면 곤장에 죽을 것이니 바로 아뢰라.”

노랑(老娘, 늙은 여자. 이 작품에서는 늙은 여인인 이 자객을 칭하는 고유 명사처럼 쓰인다.)이 왈,

“노신(老身, 늙은 몸)이 본디 낙양 사람으로 검술을 숭상하더니, 황 각로[→ 황 부인의 부친으로 ‘각로’ 벼슬에 있다.]의 시비 춘월이 찾아와 이리이리하웁기로[→ 이진 고전 소설에 흔히 보이는 표현인데, 문맥상 짐작해 볼 때, 노랑에게 벽성선을 없애 달라고 의뢰하기 위해 벽성선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는 것이겠다.] 분기(= 분한 생각)를 이기지 못하여[→ 노랑은 벽성선이 나쁜 인간이라고 오해한 거다.] 삼척검[→ 길이가 석 자 정도 되는 긴 칼. 1자는 30.3cm쯤 되는 길이이다.]을 가지고 댁에 들어와 춘월의 인도로 몰래 선랑 처소에 가 문틈으로 보니, 천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회한한[→ 매우 드물거나 신기한] 숙녀 가인(淑女佳人, 교양과 예의, 품격을 갖추어 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이라. 비천한 소견에도 생각하온즉 그러할 리 만무하온 지라[→ 춘월이 벽성선에 대해 비방한 말이 참일 리 없다고 생각한 거다.] 문을 열고 들어가오니[→ 벽성선을 해칠 생각을 버렸기에 몰래 들어가지 않은 거다.] 남자가 놀라거늘, 노신이 전후사를 말씀하웁고 도로혀[→ 도리어] 삼척검으로써 황 씨 무리[→ 황 씨 모녀와 시비 춘월]를 처벌코자 하온즉, 남자가 노신의 소매를 잡고 이르시되, ‘처첩지간은 군신(君臣) 같은지라, 어찌 신하를 위하여 임군을 해하리요.’[→ 첩인 벽성선 자신을 신하에, 정실부인인 황 부인을 임군에 비유한 말로, 황 부인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황 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말이다.] 하시거늘, 그 말씀에 감동하여 분기를 참고 천비 춘월만 잡아 저자에서 엄벌하고 갓잡더니,[→ 벽성선의 부탁으로 주인인 황 부인은 벌하지 않았으나, 그 여종은 처벌한 거다.] 그 후 오랑개가 창궐하웁기로 피난하였다가 마침 친척을 찾으러 도성에 들어왔삽더니, 오늘 날 이 죄를 당하오니 그 밖에 아뢰 말씀이 없사오니 노야(= 남을 높여 이르는 말)는 밝게 다스리심을 바라나이다.”

⇒ ‘노랑’은 나이가 일흔이 넘는 할머니 자객인데 무공만 뛰어난 게 아니라, 나름 의기(義氣)를 지니고 있어 의협(義俠)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그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비정한 길러가 아니라는 거다. 시비 춘월에게 속아, [첩인 벽성선이 본부인을 질투해 죽이려 한다고 여겨] 벽성선을 죽이려 했으나 그 무고함을 깨닫고는 벽성선을 살려 주고 도리어 춘월을 단죄했음을 고하며 남은 처분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거다.

⇒ 참고로 ‘중략’ 부분을 설명하자면, 양창곡이 이 자객을 잡아 오게 한 것은 아직 벽성선이 누명을 벗지 못했기에 당시의 정황을 밝히기 위함이고, 노랑은 벽성선이 아직도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참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벽성선의 누명을 벗겨 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연왕이 춘월을 잡아 오니, 춘월이 떨며 아뢰되,

“소비(小婢, 계집종이 상전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병으로 정신이 흐려 이전 일을 다 잊었나이다.”

연왕이 대로(= 크게 화를 냄)하여 형틀을 내오니, 춘월이 견디지 못하여 대강 아뢰거늘, 왕이 생각하되,

‘제 이미 죄를 실토하나 내 황 씨를 내치지는 못할 것이요, 선량의 결백은 충분히 밝힌지라 다시 염려할 것이 없다.’

⇒ 춘월과 황 씨의 죄를 다 알지만, 신분이 낮은 춘월은 쉽게 처벌해도 정실부인인 황 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여기고 선량의 결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다.

하고 춘월은 형부(刑部)로 보내고 선량을 들어오라 하니.[→ 벽성선은 연왕부, 즉 연왕 양창곡의 집 근처에서 죄인을 자처하며 따로 기거하고 있었다.] 선량이 종시 들어오지 아니하거늘, 홍랑[→ 강남홍. 양창곡의 또 다른 첩]이 나아가 왕더러 왈,

“춘월의 실토로 선량의 누명을 씻음이 쾌하니[→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지만] 종시 불응하니,[→ 선량이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지 않으니] 첩이 가서 물어보리이다.”

하고 이에 선량을 보고 고집함을 물으니[→ 왜 집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지 그 이유를 물으니], 선량이 탄식하며,

“첩이 무슨 다른 소견이 있으리오마는 만일 들어갔다가 또 동렬[→ 같은 수준이나 위치.]의 해를 볼까 두렵노라.”

⇒ 한마디로 다시 황 부인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다는 거다.

홍랑 왈,

“지금은 위로 태상왕과 허 부인[→ 양창곡의 부모다.]이 계시고 아래로 상공[→ 양창곡]이 강명(剛明, 성질이 곧고 두뇌가 명석함)하시니, 천비가 감히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거늘 고집하지 말라.”

⇒ 예전처럼 춘월이 간계를 부려 목숨을 위협당할 일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는 거다.

하고 함께 들어감을 청하니, 선량이 마지못하여 홍랑과 들어가 문후하온대, 태상왕이 그사이 고초를 위로하더라.

선량이 물러 나와 윤 부인[→ 연왕의 첫 번째 부인]께 문후하고 황 부인 침소에 가 거적을 깔고 죄를 청하니,[→ 아무 죄도 없는 벽성선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던 황 부인에게 사죄하는 모습에서 벽성선의 어질고 착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황 부인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황 부인도 자기 죄를 알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죄도 없이 고생하던 벽성선이 오히려 죄를 청하니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다.] 선량을 붙들어 당에 올려 좌(座)를 주고[→ 벽성선을 이끌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인데,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행동이겠다.] 이르기를,

“그대의 고초는 나의 시비가 간악한 연고니, 나의 허물이 어찌 없다 하리오? 그러나 간악한 시비 이미 승복하였고 그대의 무죄함이 백옥 같으니 무슨 허물이 있으리오?”

⇒ 황 부인은 모든 일을 춘월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잘못은 약간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이 살짝 더해져 나온 말로 볼 수 있겠다.

선량이 사례 왈,

“친첩이 불민하여[→ 어리석고 둔하여 재빠르지 못하여] 이런 화를 당하였더니, 부인이 관대하신 덕을 베푸사 천한 몸을 좌하(座下, 받들어 모시는 자리 아래)에 용납하시니 첩이 일생에 부인 은택을 다 갚지 못할까 하나이다.”

⇒ 벽성선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처첩

사이의 상하 질서가 엄격한 봉건 사회에서 처첩 사이의 갈등을 당대 위계질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봉합함으로써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로, 이 지문의 판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나, 이본에는 황 부인이 천자의 명령에 따라 연왕의 집에서 쫓겨나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 곳에서 마침내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 지문의 판본에서는 황 부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갈등이 봉합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통해 이 지문의 판본이 정실인 황 부인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당대의 위계질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황 부인이 좋은 얼굴로 위로하고 주과(= 술과 과일)를 내어 먹이니, 선량이 종일토록 부인을 뵈서 말씀하다가 석양에 돌아오더라.

* 참고 자료

이해와 감상

- 1) 「옥루몽」은 19세기 중반에 남영로가 자신이 지은 「옥련몽」을 개작한 장편 소설이다. 당대 최고의 화제작이자 인기작이었다고 한다. 문장과 서화에 뛰어났지만 입신양명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남영로에겐 필생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 2) 이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은 천상의 선관과 다섯 선녀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 기이한 인연을 맺고 영웅적 활약을 마음껏 펼치다 천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인간 세상의 이야기는 결국 천상 존재들의 ‘한바탕’ 꿈이었던 셈이니, ‘꿈을 통한 액자 구조’가 소설의 기본 뼈대로서 몽자류 소설의 전통을 이어 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3) 천상에서 문창성(文昌星)이었던 양창곡이 적당한 다섯 선녀와 결연하는 이야기는 「구운몽」의 사랑 이야기를 닮았다. 하지만 양창곡과 천상에서 홍란성(紅鸞星)이었던 강남홍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군사적 활약상은 군담 소설의 영웅 이야기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군담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중적 재미가 한층 증대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소설 속에 군데군데 보인다.
- 4) 작품 속 다섯 여인은 저마다 모두 개성이 뛰어난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생동감 넘치고 분량을 크게 차지하는 인물은 흔히 홍랑이라 불리는 강남홍이다. 그는 기생 출신으로서 양귀비에 버금가는 절대 미모를 가진 인물로, 양창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 물에 뛰어들었다가 간신히 살아난다. 그 뒤에 무술과 병법, 도술을 배우고서부터는 양창곡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엄청난 무공을 세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준다. 개인사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할 뿐만 아니라, 사건 전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당돌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뚜렷이 드러낸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은 양창곡이 아니라 강남홍이 아닐까 싶다. 이 소설에서 「강남홍전」이 따로 나올 만큼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캐릭터라 하겠다.

[35~37] 현대시 : (가) 백석, 「가무래기의 락」

* 작품 평가

시적 화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빚을 얻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다. 얼마나 서글프고 좌절했을까? 하필 날씨도 춥다. 그늘진 거리를 걸어 돌아오다가 시적 화자는 응달에 놓여 있는 가무락조개 (=가무라기)를 본다. 조개도 추워 보인다. 그런데 문득 시적 화자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 세상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냐!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삶이 오히려 올바른 거야!’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 보자. 시적 화자의 감정 상태를 따라가면 시를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워질 듯하다.

* 작품 분석

가무락조개(= 백합과의 조개인 가무라기) 난 뒷간 거리[→ 뒤쪽 거리, 뒷길]에

빚을 얻으러 나는 왔다[→ 돈을 빌리러 온 상황이다.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 화자는 가무라기가 제철을 맞은 때에 ‘뒷간 거리’에 돈을 빌리러 왔나 보다. 여기서 ‘뒷간 거리’는 시장의 뒷골목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시장 뒷골목에서 찬물에 담겨 있는 가무라기들을 보면서 화자가 돈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빛이 안 되어 가는 탓에

가무래기도 나도 모도[→ 모두] 춥다

⇒ 그런데 돈을 빌리는 데에 실패했다. 화자는 허탈한 마음이 되었을 것이고 낙담도 했을 것이다. 빚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화자는 돈을 빌리러 가는 길에 보았던 그 가무라기를 다시 보게 된다. 그런데, 돈을 빌리지 못한 처참한 마음으로 보니 차가운 물에 담긴 가무라기까지도 추워 보인다.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자연물에 투사됨으로써 화자의 처지와 자연물의 처지가 동일시되고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 환기되고 있는 시구이다.

추운 거리의 그도 추운 응달쪽을 걸어가며

⇒ 추운 날씨인데 뒷길에서도 더 추운 그늘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것은 빚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적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꾸려 가는 시적 화자에게 현실은 춥게만 느껴질 것이다.

내 마음은 우쭐댄다 그 무슨 기쁨에 우쭐댄다

⇒ 시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가난과 추위에 절망하고 있던 화자가 갑자기 ‘기쁨에 우쭐댄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이 추운 세상[→ 거리만 추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춥다고 했다. 시적 화자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살아가기에 가혹하다는 말이겠다. 이 ‘세상’은 아래에 나오는 ‘이 못된 놈의 세상’이기도 하다.]의 한구석에

맑고 가난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 돈을 빌리지 못했는데도 화자의 마음이 새삼 기쁨에 차오르게 된 이유가 상상을 통해 전개된다. 여기서 ‘친구’는 가무라기일 수도 있고 가무라기를 보면서 떠올리게 된 어떤 존재일 수도 있겠다. ‘맑고 가난한 친구’라는 구절에서 청빈, 즉 맑은 가난을 긍정적 가치로 찬양하는 전통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청빈한 삶이야말로 오히려 올바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종합해 보면, ‘맑고 가난한 친구’는 가무라기로 표상되는 존재들로서, 가난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결한 삶의 자세를 지켜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추운 거리를 지나온 걸

얼마나 기뻐하며 락단하고[→ 즐거워하고]

⇒ 추운 거리에 돈을 구하러 나갔다가 돈을 구하지 못하고 온 것을 ‘맑고 가난한 친구’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는 빚을 얻지도 못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 ‘이렇게 추운 거리를 지나온 걸’] 오히려 칭찬해 주는 어떤 존재를 떠올리고 있다. 돈을 구했다면 잘못된 세상과 한편이 될 뻔 했는데, 돈을 구하지 못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친구를 상상하며, 그런 친구와의 유대감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즈런히[→ 가지런하게] 손각지 벼개 하고 누어서

⇒ 느긋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다. 낙천적인 삶의 자세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못된 놈의 세상을 크게 크게 욕할 것이다.

⇒ ‘이 못된 놈의 세상’은 화자가 곤궁하게 살아가는 현실이자, 고결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려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크게 크게 욕’하는 행위의 주체는 ‘맑고 가난한 친구’이고 가무라기로 표상되는 어떤 인물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크게 크게 욕’하는 것은 그러한 청빈한 인물이 타한 세상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빚을 얻지 못해 위축된 화자를 위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 줄 존재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궁핍한 삶으로 인해 위축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38~42] 사회 : 국세의 원천 징수 제도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제척 기간, 소멸 시효

납세 의무, 신고에 의한 확정, 부과에 의한 확정, 국세, 원천 징수 제도, 근로 소득세, 납세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 법정 납부 기한, 과세 관청, 납세 고지, 국세 기본법, 징수권, 징수 처분, 부과권, 부과 처분, 국세 기본법 시행령, 기산일, 제척 기간, 형성권, 소멸 시효, 청구권, 독촉, 압류

*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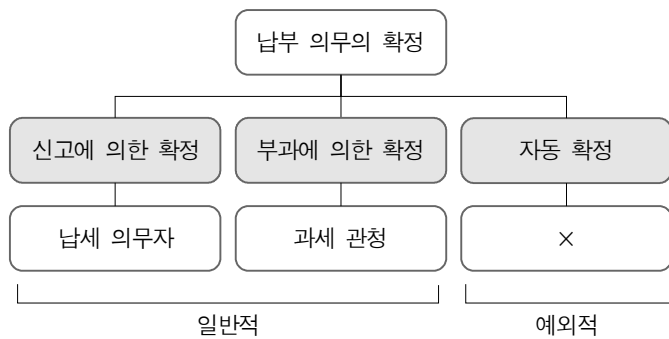
문단1 : 납세 의무의 확정

1)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신고에 의한 확정**과 과세 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했을 때에 확정되는 **부과에 의한 확정**으로 나뉜다.

⇒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기도 하고, 과세 관청에 의해 확정되기도 한단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싶는데

2)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나 과세 관청의 아무런 관여 없이[→ ‘신고에 의한 확정’도 아니고 ‘부과에 의한 확정’도 아닌데] 납세 의무가 **자동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

⇒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이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측**[→ 납세 의무자]도, **세금을 걷는 측**[→ 과세 관청]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 액수가 확정되는 세금이겠다.



3) 근로 소득세 등의 **국세**에 대한 원천 징수 제도가 대표적이다.
⇒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원천 징수 제도’라 하나 보다. 앞으로의 논의의 초점도 여기로 좁혀지겠다.

문단2 :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제도

1)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 금액을 지급 할 때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근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놓았다가 [→ 원천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는 **납세 의무자**이고 회사는 **원천 징수 의무자**로, ...

⇒ ‘근로 소득세’는 국세에 속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자동 확정’되는 ‘원천 징수 제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관세 관청이 부과하지 않아도 세액이 확정되며, 이는 원천 징수 의무자에 의해 대신 납부된다.

2) 세액은 [근로자에게] 소득 금액이 지급될 때에 **자동 확정**되며 그 **법정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 근로자 ‘을’[→ 납세 의무자]에게 2020년 11월 25일에 근로 소득이 지급되었다면 회사 ‘갑’[→ 원천 징수 의무자]은 국가에 2020년 12월 10일까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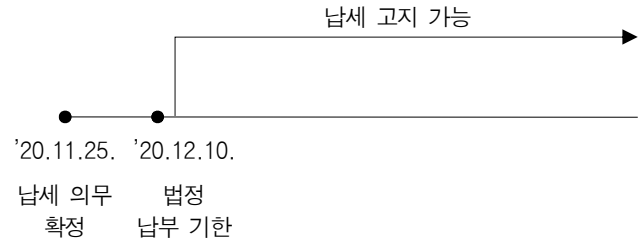
3) 그런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하지 않거나 원천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런데 회사 ‘갑’이 2020년 12월 11일이 되어도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4) **그럴 때**[→ 근로 소득세가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때] **과세 관청**은 회사에 납세의 이행을 촉구하는 **납세 고지**를 할 수 있다.

⇒ ‘납세 고지’는 **이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납세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빨리 내라는 일종의 고지서겠다.

[주목] 이때 ‘납세 고지’의 대상이 **납세 의무자**[→ 근로자 ‘을’]가 아닌 **원천 징수 의무자**[→ 회사 ‘갑’]라는 점에도 주목해야겠다.



5) **국세 기본법**에 따를 때 납세 고지는 기본적으로, 결정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세금 100만 원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징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국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 역시 자동으로 세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 징수를 위해 취하는 **징수 처분**으로 간주된다.

⇒ 그렇단다. 근로 소득세의 경우 문단1-2)에서 설명한 대로 ‘결정된 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 고지’도 자동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려는 것[→ 징수 처분]으로 봐야겠지만

6) 그러나 세액을 고지한다는 점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권리[→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임을 알릴 수 있는 권리]인 **부과권**의 행사[→ 부과 처분]로 볼 여지도 있다.

⇒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을 고지한 것’[→ 부과 처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주목] 한마디로 ‘납세 고지’는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띄고 있는 게다.

문단3 : 부과권과 제척 기간

1) 현행 **국세 기본법 시행령**은[→ 국세 기본법에서는 ‘납세 고지’를 ‘징수 처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천 징수를 통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단2-3)의 상황]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 고지를 징수 처분 외에 **부과 처분**으로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 ‘납세 고지’의 이러한 측면은 관련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 고지’를 우리는 징수권의 행사로 볼 수도 있고, 부과권의 행사로 볼 수도 있는 게다.

2) 또한 동 시행령은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권의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날인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로서, ...

⇒ 말은 복잡하지만 결국 ‘부과권의 제척 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의미한다. 설령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라 하더라도 ‘제척 기간’만 지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권리자[→ 부과권의 경우 ‘국가’]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 부과권의 경우 ‘원천 징수 의무자가 뭐라 생각하든 국가 마음대로’]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과권의 경우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권리인 **형성권**에 주로 적용된다. 부과권도 형성권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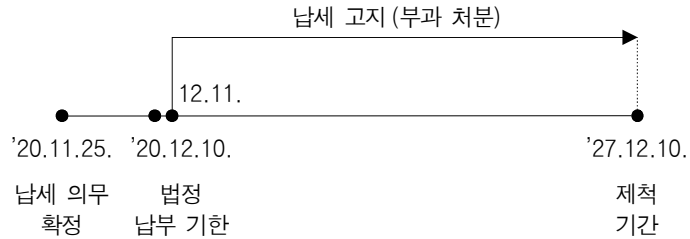
⇒ 그대로 읽어 주면 되겠다. ‘부과권’에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이유는

부과권이 형성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 4)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그 외에 ‘사기 그 밖의 부정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

⇒ 원천 징수 의무자가 법정 납부 기한을 그냥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7년, 그냥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심지어 나쁜 것까지 곁들였을 때는 10년이란다.

⇒ 예를 들어 회사 ‘갑’이 2020년 12월 11일이 되었는데도 착오로 인해 근로자 ‘을’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 관청은 2027년 12월 10일까지 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 처분]. 그 이후에는 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5) 그런데 이미 세액이 자동 확정된 사안에 대해[→ 애초에 부과권을 적용할 사안이 아닌데] 세액을 결정하는 권능인 부과권을 적용하는 것 이어서 이들 규정은 입법상의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주목] 중요한 지적이다. ‘부과권’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근로 소득세’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는 애초부터 ‘납세 고지’를 부과 처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이기도 하겠다.

문단4 : 징수권과 소멸 시효

- 1) 한편 징수권은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으로서, 원천 징수되어야 할 국세의 경우에 원천 징수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된다.

[맥락 짚기] 이제부터는 논의의 초점을 ‘부과권’에서 ‘징수권’으로 옮기려나 보다.

⇒ 부과권에 의해서든 ‘자동 확정’에 의해서든, 세액이 결정되면[→ 납세 의무가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징수권’의 문제가 된다.

[Rew] 문단2-5)의 설명과 비교했을 때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 2)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기본법 시행령’이 아니다.] 징수권은 제척 기간이 아닌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소멸 시효** 역시 [제척 기간과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의 시간적 한계로서, 그 기산일 역시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다.

⇒ 이렇게 보면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이 다르지 않은 듯하지만

- 3) 다만 소멸 시효는 권리자[→ 징수권의 경우 ‘국가’]가 상대방[→ 징수권의 경우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징수권의 경우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척 기간과 다르다.

⇒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주로 적용되는 권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다.

[주목] 결국 ‘납세 고지’를 부과 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징수 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된다.

- 4) 또한 중단 없이 해당 기간 동안 유지되는 제척 기간과 달리, 소멸 시효는 과세 관청이 납세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권 행사[→ 징수 처분]를 했을 때 진행이 중단된다.

⇒ 또 다른 차이점이다. ‘제척 기간’은 중단될 수 없지만, ‘소멸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주목] 이 사실보다도 ‘납세 고지’가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 임에 더 주목해야겠다.

제척 기간	소멸 시효
부과권[→ 형성권]	징수권[→ 청구권]
중단 불가능	중단 가능

- 5) 예를 들어 과세 관청이 납세 고지를 하면 소멸 시효는 중단되고 해당 고지의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여전히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시효 기간을 처음부터 계산하게 된다.

⇒ 표현상으로는 ‘소멸 시효의 중단’이지만 사실상 ‘소멸 시효의 무효’에 더 가까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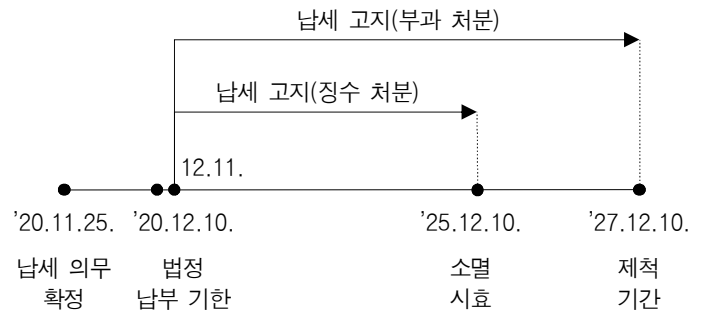
⇒ ‘납세 고지의 납부 기한’과 문단2-2)의 ‘법정 납부 기한’ 역시 제대로 구분해야겠다.

[참조] 소멸 시효가 중단된 이후 회사가 ‘해당 고지의 납부 기한’까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멸 시효가 다시 계산될 일도 없을 게다. 이미 징수권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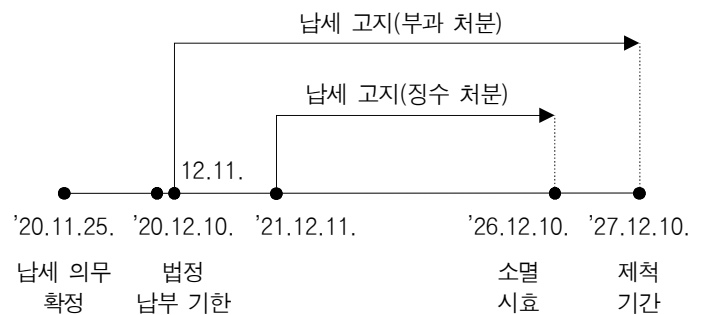
- 6)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5년이고, 5억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10년이다.

⇒ 세액이 크면 그만큼 더 받아 내야 하고, 그래서 소멸 시효 역시 더 길어지는 것이겠다.

⇒ 문단3-4)의 예시를 이어서, ‘을’의 근로 소득세가 5억 미만일 경우 소멸 시효는 2025년 12월 10일에 완성된다[→ 이때까지 징수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멸 시효의 완성 전에 과세 관청이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세를 납부할 것을 ‘납세 고지’한다면 그때까지 소멸 시효는 중단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멸 시효는 다시 시작되고 2026년 12월 10일에 완성된다.



문단5 :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의 구분

- 1)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의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과세 당국이 징수 처분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세 징수권 소멸 시효가 먼저 완성되어 해당 국세에 대한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

⇒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다.

- 2) 또한 과세 현장에서는 부과권의 제척 기간과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혼동하는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과세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41번의 <보기>가 바로 이런 경우겠다. ‘갑’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과세 관청이 이를 아직 만료되지 않은 ‘부과권의 제척 기간’과 혼동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 징수권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